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89 발의연월일: 2023. 5. 25.

발 의 자: 박형수 · 엄태영 · 조명희

임병헌 · 지성호 · 김석기

김형동 · 김영선 · 강기윤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얼굴이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
	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
	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
	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